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②>

국회의원 특권 실상: '국민의 의무' 분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납세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납세의 의무에서 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매월 지급 받는 입법활동비 등의 월정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회의참석수당)'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하여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의원의 입법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실비개념으로 소득이 아니라 경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이 비과세 부분의 세비를 65.8%인상했다. 이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급여 인상률의 약 19배에 해당한다(【표 1】 참고).

【표 1】 국회의원 수당별 인상률

(단위 : 원)

	2008~10년		인상률	2012년~2013년		비고
	금액	금액		금액	인상률	
일반수당	5,200,000	6,245,000	20%	6,464,000	3.5%	급여 성격
관리업무수당	468,000	562,050	20%	581,760	20%	"
정근수당	5,200,000	6,245,000	20%	6,464,000	3.5%	"
명절휴가비	6,240,000	7,494,000	20%	7,756,800	3.5%	"
가계지원비	868,400	폐지	-	폐지	-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	130,000	-	실비변상 성격(주장)
입법활동비	1,800,000	1,891,800	5.1%	3,136,000	65.8%	"
특별활동비	18,000(일)	18,918(일)	5.1%	31,360(일)	65.8%	"
월평균액	9,419,730	9,973,760	5.9%	11,496,820	15.3%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일반 국민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보수를 받지 않는 학술원이나 예술원의 회원 수당, 일직 및 숙직에 대한 비용, 특수 분야 군인의 위험수당, 특수 경찰의 전술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

- 보수를 받지 않는 학술원, 예술원의 회원 등의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법령·조례에 의한 제복 착용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공장·광산 근무자의 작업복
- 특수 분야 군인의 위험수당, 특수경찰의 전술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학교, 연구소, 언론사 근무자의 월 20만원의 수당 등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직급보조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즉,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반 국민보다 낮은 비율로 납부한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매달 지급 받지만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3항에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월급과 수당은 물론 직급보조비,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표 2】 참고).

【표 2】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기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소득세 비과세소득(소득세법 12조 3호)중 외국 정부/국제기관 근무자의 급여, 외국 주둔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 소득세법의 비과세 근로소득(시행령 12조) : 실비변상적 급여 등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군인, 군무원의 급여, 외국/북한에서의 근로소득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일반 공무원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가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이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수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및 선거 전후에 개최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의원은 소수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모금한도도 없고, 회계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결과,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제19대 국회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300여회 개최되었다.

※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③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